

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「도로법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1조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
○ 조례안 제2조제3항 및 제3항

- 「도로법」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“원인자” 정의규정 수정
-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 반영(20일 ⇒ 30일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31조 및 제64조”를 “제35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원인자”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</u></p>	<p><u>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제35조 및 제9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①·② (생략) ③ "<u>원인자</u>"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"<u>원인자</u>"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거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.</p>
<p>1. <u>주유소</u></p>	<p><삭 제></p>
<p>2. <u>주차장</u></p>	<p><삭 제></p>
<p>3. <u>자동차정류장</u></p>	<p><삭 제></p>
<p>4. <u>자동차수리장</u></p>	<p><삭 제></p>
<p>5. <u>자동차세차장</u></p>	<p><삭 제></p>
<p>6. <u>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</u></p>	<p><삭 제></p>

각종 영업소

제3조(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3조(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30일 이내 -----
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안전건설과 장 근 용
연 락 처	(033)330-2406

관계 법령

□ 도로법

제35조(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)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(이하 "타공사"라 한다)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(이하 "타행위"라 한다)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~③ 생략

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